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035호
- 나. 제 출 자 : 서울시교육감
- 다. 제출일자 : 2020. 10. 16.
- 라. 회부일자 : 2020. 10. 26.

II. 제안이유

-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시행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적용받는 대상 학교에 대해 수업료 및 입학금 관련 업무 처리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모든 국민의 교육기본권 보장을 실현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 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상위 법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문구에 맞게 정비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위임하여 동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학교(무상교육 제외 대상 학교)를 중심으로 개정(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나. 무상교육 시행을 위하여 법 제10조의2가 신설되어 조례 목적에 동조문 추가(안 제1조)

다. 조문 전단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후단 단서에는 법 제10조의2제3항 및 영 제13조의2에 따라 “수업료와 입학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사립학교의 대상”을 단일 조문으로 규정한 것을 별도의 항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함(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

라. 현행 제4호와 같이 1개 호로 합쳐있는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를 별도의 호로 각각 구분(안 제2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마. 특성화고등학교는 재정결함보조를 받아 무상교육 대상 학교에 해당되지만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이 부여된 학교로서 설립목적 을 위하여 필요시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도록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로 그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2항제5호)

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을 준용하여 학교에서 휴업한 경우 수업료를 면제하는 대상 기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명확히 함(안 제3조제5항)

사. 공립·사립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이므로 동 학교에 대해 입학금을 면제한다는 조항은 실효성이 없어 삭제함(안 제3조)

아. 유치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방법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를 따르도록 함(안 제4조제1항)

자. 무상교육 대상 학교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받지 않으므로 해당 학교에 전출입하는 학생에 대한 징수방법은 삭제하고, 무상교육 제외 대상 학교에 전출입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일할 계산 징수방법을 신설하여 업무 명확화 (안 제4조제4항)

차. 무상교육 대상 학교에서 전출하는 학생에게는 수업료를 받지 않아 반환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은 삭제하고, 무상교육 제외 대상 학교에서 전출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도록 일할 계산 반환방법으로 현실화(안 제6조제2항)

IV.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별첨 7

- 「초·중등교육법」 제10조(수업료 등),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예외)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별첨 2)

다. 협의 : 예산담당관, 유아교육과, 진로직업교육과, 학교지원과

라.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 입법예고(2020. 9. 4. ~ 9. 23.)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별첨 3)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별첨 4)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별첨 5)
- 학생인권영향평가 : 원안 동의(별첨 6)
- 관계법규 : 별첨 7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035호로 제출되어 2020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에 대한 의견

- 공·사립학교의 수업료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제2항¹⁾ 및 같은 법에 따라 위임된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립의 각급학교 수업료는 학교별 실정과 경제성장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계획,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균일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사립 유치원 및 사립초등학교, 일부 특성화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등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의 장이 수업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²⁾

1) 「초·중등교육법」 제10조(수업료 등)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거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공립·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2조(징수금액) 공·사립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학교별 실정과 경제성장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계획,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따라서 그동안 무상교육대상이 아닌 고등학교의 경우 동 조례에 따라 수업료를 징수하였으나, 「초·중등교육법」 개정³⁾에 따라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수업료 등을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의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 왔습니다.
-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은 금년 제3차 추경을 통해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을 한학기 앞당겨 시행함으로써, 2021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던 고교무상교육이 사실상 2020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되었는바,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변동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일부 용어와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동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1. 유치원
2. 초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 중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학교
4. 영 제9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및 영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영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5.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참고로, 공립유치원, 공·사립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료와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참고.

- 3)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3.]

[시행일]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

1. 2020학년도: 고등학교 등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
2. 2021학년도 이후: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

나. 주요 조문에 대한 의견

- 동 조례안 제4조제4항은 학생들이 전·출입할 경우 현행 조례 제4조제4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던 수업료 및 입학금에 대한 징수규정을 삭제하고, 학교에 학생들이 전·출입할 경우 종전 일할계산 방식에 따른 징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각 호를 새롭게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 조례안 제6조는 전출의 경우 수업료 등의 반환사유 발생시 일할계산하는 방법으로 수업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먼저 전·출입에 따른 수업료와 입학금의 납부 및 반환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4)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 그리고 전·출입시 징수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바, 유치원은 이에 따른 징수방법을 적용(안 제4조제1항)하면 되므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으로 학교의 장이 수업료 등을 정하는 학교를 제외한 초·중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12조제4항5)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수업료 등의 비용을 받을 수 없는바, 학생들이 이들 학교에 전·출입할 경우 수업료 등에 대한 징수방법을 규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할 것입니다.

-
- 4)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징수방법) ① 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원장은 유아의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입학금은 유아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③ 유아가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설립자가 같은 유치원에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유치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유치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
2. 설립자를 달리하는 유치원에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유치원에서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고, 전입하는 유치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만을 징수한다.
④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제외한 유치원 원비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의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 5) 「초·중등교육법」 제12조(의무교육) ① ~ ③ (생략)
④ 국립·공립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제3항에 따라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실제 학생의 전·출입시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방법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초·중등학교 중 학교의 장이 별도로 수업료 등을 정하는 사립학교에 전·출입하는 경우에 한정될 것입니다.

[표-1] 동 개정조례안 적용 대상 학교

구 분	공·사립 유치원	사 립								합계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특성화	각종 학교	자사고	특목고	고등기술 학교	각종 학교	소계	
학교수	539	39	2	2	22	10	1	2	35	617

* 특성화중학교: 대원국제중학교, 영훈국제중학교, * 각종학교(중): 선화예술중학교, 예원학교

유형	학교수	학교명
자사고	22	경문고등학교, 경희고등학교, 대광고등학교, 동성고등학교, 배재고등학교, 보인고등학교, 선덕고등학교, 세화고등학교, 세화여자고등학교, 송문고등학교, 신일고등학교, 양정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부속 이화금란고등학교, 이화여자고등학교, 장훈고등학교, 중동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하나고등학교, 한가람고등학교,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현대고등학교, 휘문고등학교
특목고	10	대원외국어고등학교, 대일외국어고등학교, 덕원예술고등학교,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서울외국어고등학교, 선화예술고등학교,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한영외국어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1	한국제과학교
각종학교	2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여명학교

○ 따라서 동 조례 제4조제4항의 적용대상은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학교에 한정되는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실효성이 없어 이를 삭제하고,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학교의 전·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3호는 전출과 전입으로 구분하여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로 각각 규정함으로써 수업료 및 입학금에 대한 징수방법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이와 같은 개정에 따라 수업료 반환을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 제 6조 역시 학교의 장이 수업료 등을 정하는 학교에 한정되어 수업료 반환사유가 발생하는바, 안 제6조제2항은 실효성 없는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를 명확히 했다는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동 조례안의 개정사항은 용어정비 및 관련 상위법률의 준용 등에 관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496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10조(수업료 등)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거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공립·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3.]

[시행일]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

1. 2020학년도: 고등학교 등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
2. 2021학년도 이후: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

제12조(의무교육) ①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에 필요한 초등학교, 중학교 및 초등학교·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기 곤란하면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거나,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나 국립 또는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일부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국립·공립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제3항에 따라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0. 9. 25.] [대통령령 제31021호, 2020. 9. 22., 일부개정]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학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개정 2001.1.29., 2001.3.2., 2007.5.16., 2010.6.29., 2013.3.23.>

1. 삭제 <2010.6.29.>
2. 삭제 <2010.6.29.>
3. 삭제 <2010.6.29.>
4. 삭제 <2010.6.29.>
5.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6.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7.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와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8. 삭제 <2010.6.29.>
9. 삭제 <2010.6.29.>
10.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0. 7. 30.] [교육부령 제215호, 2020. 7. 30., 일부개정]

제8조(징수방법) ① 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원장은 유아의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입학금은 유아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③ 유아가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설립자가 같은 유치원에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유치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유치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
2. 설립자를 달리하는 유치원에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유치원에서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고, 전입하는 유치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만을 징수한다.

④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제외한 유치원 원비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의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